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가. 「지하수법」 제30조의2(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) 및 제30조의3(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·징수)이 신설(2005. 5. 31)되어 지하수의 적극적인 보전관리 및 체계적인 개발 이용 등을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 사용자에게 소정의 원수대금을 부과·징수하고

나. 「지하수법」 제4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 등)의 개정(2005. 5. 31)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함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관계법령

「지하수법」 제30조의2·제30조의3·제40조 등

3. 주요골자

가.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
(안 제2절)

- ▷ 지하수관리계획수립, 지하수영향조사, 지하수오염평가보고 등
- ▷ 위원장 포함 11인이내, 위원장은 도시국장, 임기 2년

나.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· 이용과 보전 · 관리에 소요되는
사업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
(안 제3절)

다. 지하수개발 · 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· 징수
(안 제4절)

▷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
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
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함.

※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

‘07년 : 150원/톤, ‘08년이후 : 160원/톤

라. 「지하수법」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·
징수절차규정(안 제5절)

4. 검토의견

□ 본 조례 제정 건은

○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· 이용과 보전 · 관리에 소요되는
필요경비를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지하수개
발 · 이용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수질유지보전 및 체계
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보건위생에 크게 기여 한다고
판단되며

- 2005. 5. 31부로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재원조성관리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한다고 생각되며
- 또한 중구와 영도구 등 6개구에서는 기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구, 해운대구 등 8개구에서도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상정 중에 있으며 강서구, 기장군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
- 특히 지하수 관련 법령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
□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